



[ 2013.3.23.] [ 24454 , 2013.3.23., ]

( ) 043 - 719 - 3403

1 ( ) 「 」 . <  
2012.2.3.>

2 <2012.2.3.>

3 <2012.2.3.>

4 <2012.2.3.>

5 <2012.2.3.>

6 <2012.2.3.>

7 <2012.2.3.>

8 <2012.2.3.>

9 <2012.2.3.>

10 <2012.2.3.>

11 ( ) 「 」 ( " " ) 28 2  
. 1  
5 . < 2008.2.29., 2010.3.15., 2012.2.3., 2013.3.23.>

12 ( • ) 28  
. < 2012.2.3., 2013.3.23.>  
. < 2008.2.29., 2010.3.15., 2013.3.23.>

12 2( ) 28 3 가  
15  
10 . < 2012.2.3., 2013.3.23.>  
1 가  
. < 2012.2.3., 2013.3.23.>

1. 28 1 2 1

2. 28 1 2 1

2 1

2012.2.3.>

[ 2007.7.3.]

13

[ 13 16 <2012.2.3.>]

14 ( ) 34 1  
. < 2012.2.3., 2013.3.23.>

- 1. 3
- 2. 6
- 3. 18 . . .
- 4. 20
- 5. 22
- 6. 23
- 7. 24 , . ,
- 8. 27
- 9. 28 .
- 10. 31
- 11. 40 . ( 3 1 , 18

6 )  
[ 2007.7.3.]

15 ( ) ( 14 가 「 」 23  
, 18 2 , 19 1  
4 가 . < 2012.2.3., 2013.3.23.>

- 1. 3
- 2. 4
- 3. 6
- 4. 18
- 4 2. 19
- 5. 20
- 6. 22
- 7. 23
- 8. 24 , . ,
- 9. 27
- 10. 28 .
- 11. 31

[ 2012.1.6.]

16 ( ) 40 2 .

[ 2012.2.3.]  
[ 13 <2012.2.3.>]

---

< 16869 ,2000.6.27.>

2000 7 1 .

< 20158 ,2007.7.3.>

2007 7 4 .

< 20679 ,2008.2.29.>

1 ( ) .

2 8

9 ( ) <78>

<79> .

11 , 12 2 , 13 4 , 2 " " " 가

" .

<80>

< 22075 ,2010.3.15.>

1 ( ) 2010 3 19 . < >

2 ( ) <182>

<183> .

11 , 12 2 , 13 4 2 " 가 " "

" .

<184> <187>

< 23488 ,2012.1.6.>

1 ( ) . < >

2

< 23614 ,2012.2.3.>

1 ( ) 2012 2 5 .

2 ( )

1 .

< 24454 ,2013.3.23.>

1 ( ) . < >

---

2 3

4 ( ) <38>

<39>

11 , 12 2 2 2 가 " " " " .  
12 1 , 12 2 1 , 2 , 14 , 15  
2 1 " " " " .

[별표 1] <개정 2012.2.3>

과징금 산정기준(제1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1)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같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모든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- 2)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같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- 3) 1) 및 2)의 경우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 및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다.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4조제4항의 위반에 따른 해당 품목 판매업무 또는 광고업무의 정지처분을 같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,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2분의 1의 금액에 처분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.

2.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산정기준

(단위: 천원)

전년도 총생산액 및 총수입액	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
20,000 미만	30
20,000 이상 - 50,000 미만	60
50,000 이상 - 70,000 미만	90
70,000 이상 - 100,000 미만	120
100,000 이상 - 150,000 미만	150
150,000 이상 - 200,000 미만	190
200,000 이상 - 300,000 미만	230
300,000 이상 - 500,000 미만	270
500,000 이상 - 700,000 미만	310
700,000 이상 - 1,000,000 미만	350
1,000,000 이상 - 2,000,000 미만	400
2,000,000 이상 - 3,000,000 미만	450
3,000,000 이상 - 5,000,000 미만	500
5,000,000 이상 - 7,000,000 미만	550
7,000,000 이상 - 10,000,000 미만	5 600
10,000,000 이상 - 20,000,000 미만	660

20,000,000 이상 - 30,000,000 미만	720
30,000,000 이상 - 40,000,000 미만	780
40,000,000 이상	840

[별표 2] <개정 2013.3.23>

###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6조 관련)

#### 1. 일반기준

- 가.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.
- 나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횟수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#### 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만원)
가. 법 제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1호	100
나. 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기능성화장품의 변경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2호	100
다.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3호	50
라.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4호	50
마.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5호	50
바. 법 제1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6호	100